

#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96
----------	--------

제안년월일 : 2021년 6월 16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회계감사인”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를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으로 명시하는 등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회계감사인의 범위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명확히 함(안 제2조)
- 조의 제목을 “결산자료 제출 등”으로 변경하고, 공사·공단이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회계감사인” 을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결산자료 제출 등) ① 공사·공단은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승인받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회계감사인 재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b>제2조(회계감사인 지정)</b>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사·공단의 <b>회계감사인</b>을 지정한다.</p>	<p><b>제2조(회계감사인 지정)</b>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사·공단의 <b>회계감사인</b>(「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한다.</p>
<p><b>제5조(의회 보고 등)</b> ① <u>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공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u>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b>제출</b>하여야 한다.</p> <p>②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위반된다고 <b>판단될 경우</b> 시장에게 회계감사인 재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b>제5조(결산자료 제출 등)</b> ① <u>공사·공단은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승인받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u>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b>지체없이 제출</b>하여야 한다.</p> <p>②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위반된다고 <b>판단되는 경우</b> 시장에게 회계감사인 재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p>

##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처리를 보다 공정하고 적절하게 수행함으로써 공사·공단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감사인 지정)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사·공단의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한다.

제3조(회계감사) 회계감사인은 공사·공단의 결산서 작성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사·공단에 제출한다.

제4조(결산서의 보고·승인) 공사·공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 완료 후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결산자료 제출 등) ① 공사·공단은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승인받은 회

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회계감사인 재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